

제205회 영등포구의회
2017년도 제2차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7. 12. 5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專 門 委 員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299호로 2017년 11월 1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
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인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
상위법령의 위반소지를 없애고 구민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
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 및 단체의 자원봉사센터
등록의무 규정 삭제(안 제9조)
- 나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근거

-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.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일부조항을 정비하고, 법제처의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전문 일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임.

○ 주요 개정 내용은

- 안 제1조, 안 제2조, 안 제5조, 안 제7조~제9조, 안 제11조, 안 제12조, 안 제14조, 안 제17조에서는 법제처의 [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] 등에 따라 “정의”를 “뜻”으로, “이라 함은”을 “이란”으로,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,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“당해”를 “해당” 등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

- 안 제7조제2항에서 센터장의 임기는 “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”를 “3년으로 하며”로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정비 하였으며,
 - 안 제9조제7항의 자원봉사활동 등록사항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음.
-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, 법제처의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,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관 련 법 령

■ 『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』

제19조(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.

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·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,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**대통령령**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4.1.7.]

■ 『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』

제15조(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) ① 자원봉사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을 둔다.

②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. 다만,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.

④ 특별시·광역시·도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특별시·광역시·도 지역의 기관·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
 2.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
 3.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 4.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
 5.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
 6. 시·군·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·조정·지원
 7. 그 밖에 특별시·광역시·도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
- ⑤시·군·자치구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시·군·자치구 지역의 기관·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
 2.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·홍보
 3.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
 4.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 및 시범운영
 5.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
 6. 그 밖에 시·군·자치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
- ⑥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